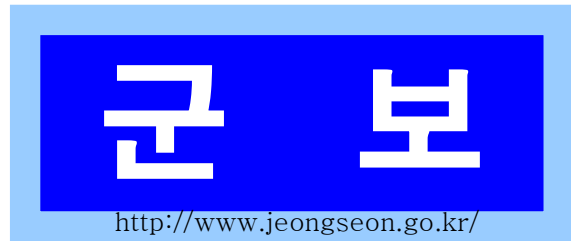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42호 2011. 5. 18. (수)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1-4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287호 군도9호선내(송원동) 송원소교량 통행제한 공고..... 4
- 정선군공고 제2011-288호 공시송달공고..... 6
- 정선군공고 제2011-289호 정선군 자동차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업지정 신청공고... 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3, FAX:560-2592)

정선군고시 제2011-4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도9호(상자개·하자개) 수해복구공사 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제9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5. 18.

정 선 군 수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단위 : km)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 간	⑤총연장 (급회연장)	⑥중 요 경과지	⑦구역결정(변경) 이 유	⑧비 고
도로 구역 결정	군 도	군도9호 (상자개· 하자개)	[전체구간] 시점 : 남 면 유평리 종점 : 여량면 구절리 [급회] 시점 : 여량면 구절리 52-2번지 종점 : 여량면 구절리 390번지	61.3 (1.84)	한치 오산 북동 구절	군도9호(상자개· 하자개)수해복구 공사 추진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2.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3. 사업시행기간 : 2011.05 ~ 2012.03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물건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 실음생략(정선군청 건설방재과 비치)

6. 설계도서, 자금계획, 지형도면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 공람장소 : 정선군청 건설방재과(033-560-2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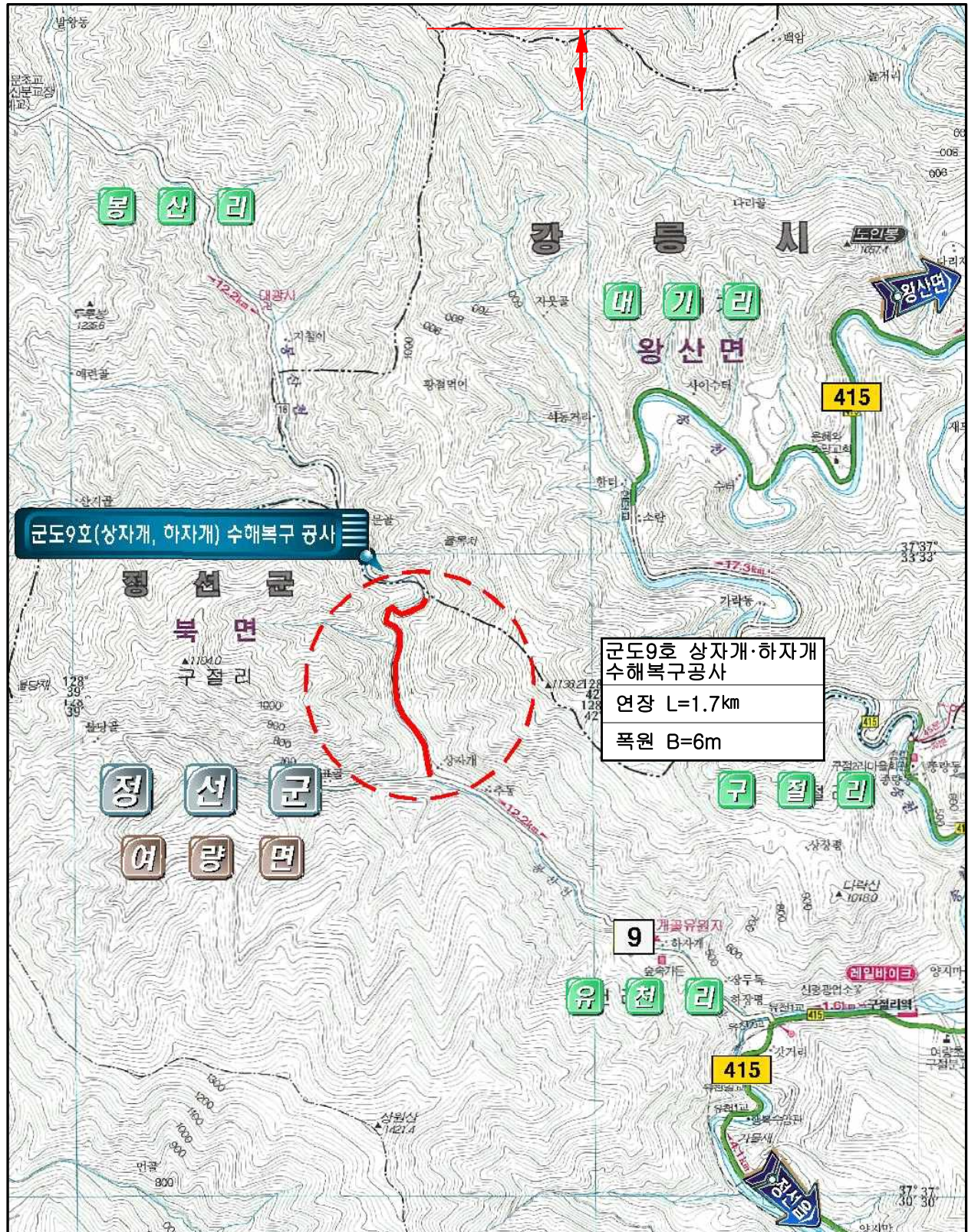
○ 도로구역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http://luris.mltm.go.kr>) 및
정선군 홈페이지(<http://jeongseon.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정선군
청 건설방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사 업 명 : 군도9호선(상자개·하자개) 수해복구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명	주 소	지분	
합계				86,340	17,320				
1	여량면 구절리	390	전	1,236	463	임영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7-6 크로바아파트 1-903		
2	여량면 구절리	390-1	도	407	67	국	건설교통부		
3	여량면 구절리	390-2	천	1,230	228	국	건설교통부		
4	여량면 구절리	산2-25	임	703	703	국	산림청		
5	여량면 구절리	산2-26	임	1,363	1,363	국	산림청		
6	여량면 구절리	산2-27	임	252	252	국	산림청		
7	여량면 구절리	산2-28	임	1,768	1,768	국	산림청		
8	여량면 구절리	산10-1	구	59,916	7,251	국	농림수산부		
9	여량면 구절리	산11-2	임	253	253	국	산림청		
10	여량면 구절리	산11-5	임	95	95	국	산림청		
11	여량면 구절리	산11-6	임	315	315	국	산림청		
12	여량면 구절리	산11-7	임	127	127	국	산림청		
13	여량면 구절리	산43-1	구	13,590	3,637	국	건설교통부		
14	여량면 구절리	산47-3	도	444	444	국	산림청		
15	여량면 구절리	산48-3	임	79	79	국	산림청		
16	여량면 구절리	산52-2	도	4,562	275	정선군	정선군		

도로구역 위치도



정선군공고 제2011-287호

통행금지(제한)
차량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 또는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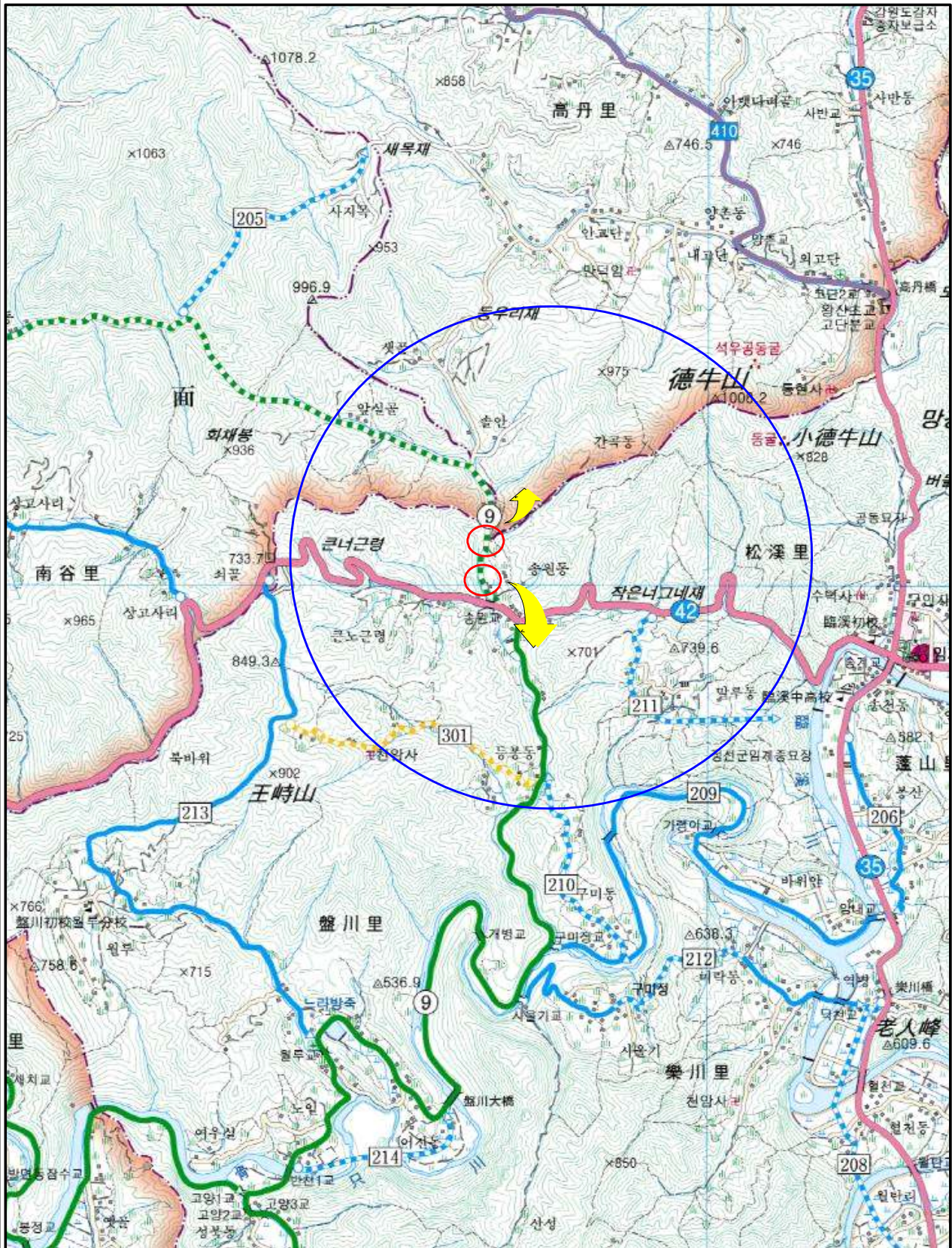
그 통행
차량운행 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1. 5. 12.

정 선 군 수

도 로 의 종 류	군도	노 선 명	군도9호선(유평 ~ 구절)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통과차량의 총중량 17ton이상 통행제한	구 간	임계면 송계1리 송원동 구간
기 간	교량개축시 까지		
이유 : 통행차량 및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과차량의 총중량 17ton 이상 통행제한			
우회도로지정 없음			
첨부서류: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시설물 위치도



정선군공고 제2011-288호

공시송달공고

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정선군 도시건축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1. 5. 9.

정 선 군 수

1. 제 목: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통보
2. 공고대상 및 내용: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시송달

대 상 자			계고일자	부과금액 (단위: 원)	건 축 법 위반내용	건축법 위반 물건지 주소 (번지생략)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번지생략)				
손권일	680804- 1*****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2011.04.05	16,380,000	무허가	정선군 남면 무릉리

3. 공고기간: 2011.05.09. ~ 2011.05.23.(15일간)
4. 근거법규: 건축법 제110조
5. 공고방법: 정선군. 읍·면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관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건축과(☎:033-560-2474,
FAX:033-560-2596) 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289호

정선군 자동차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업지정 신청공고

도로교통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정선군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관내 주요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 무단방치차량,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견인업무 대행업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행업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 5. 9.

정 선 군 수

1. 자동차 견인 및 보관업무 대행업 요건

- 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 나. 1대 이상의 견인차
- 다. 사무소, 차의 보관 장소와 견인차간의 통신장비
- 라.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력
- 마. 차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2. 대행업무 지정신청서 및 소요비용 내역 : “붙임참조”

3. 신 청 기 간 : 2011년 05월 11일 ~ 2011년 05월 20일(10일)

4. 대행업무 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자격요건 심사후 지정합니다.

* 자격요건 심사기준 : “붙임 참조”

5.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도시건축과(☎033-56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구 분 대상차량	견인료 (편도 5km까지)	추가요금 (매 1km마다)	비 고
승용자동차, 소형승합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20,000원	1,000원	
중형승합 및 2.5톤 이상 6.5톤 미만 화물자동차	25,000원	1,500원	
대형승합 및 6.5톤 이상 화물자동차	40,000원	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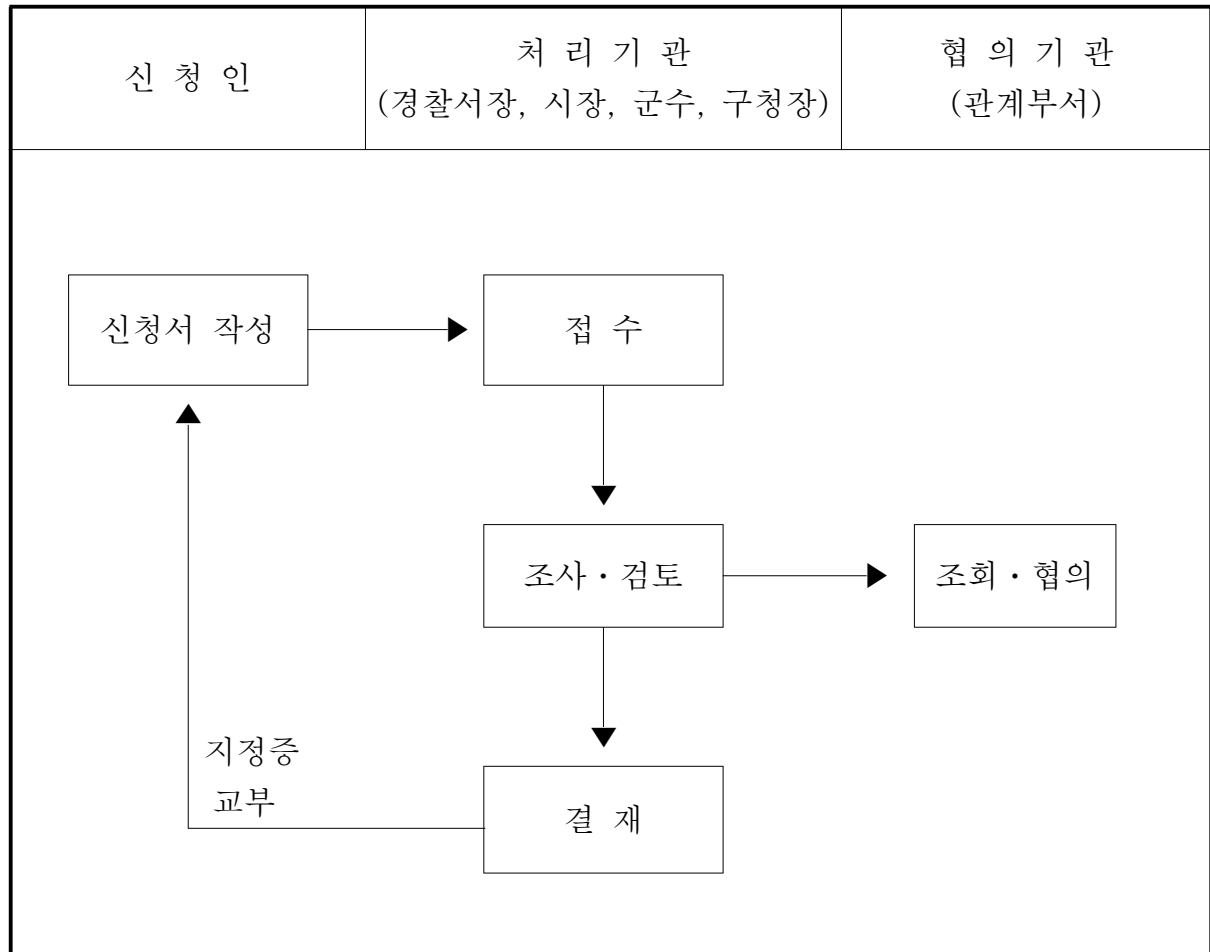
2. 보관료

가.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 산정은 견인사무소 차량입고 시간부터 최초 1시간까지 보관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한다.

나. 보관료는 1일 12,000원(시간당 500원)으로 하되, 1회 최대보관료는 1,0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대행법인등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이 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